

신단체취급특약

제 1조 [목적]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제 3조 [특약의 적용]

제 4조 [개별계약으로의 전환]

제 5조 [특약의 보험기간]

제 6조 [특약의 소멸]

제 7조 [보험요율의 적용]

제 8조 [대표자의 선정]

제 9조 [특약 보험료의 납입]

제10조 [상법 제735조3의 적용]

제11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신단체취급특약

제 1조 [목적]

이 특약은 보험계약자(이하 ‘계약자’라 합니다)와 보험회사(이하 ‘회사’라 합니다) 사이에 주 계약(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)을 단체보험계약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.

제 2조 [용어의 정의]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자 :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.
3. 보험증권 :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.
4. 피보험자 :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제 3조 [특약의 적용]

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1.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.
 - 가. 제1종 단체 : 동일한 회사, 사업장, 관공서, 국영기업체, 조합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. 다만, 사업장, 직제,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 - 나. 제2종 단체 :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,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
 - 다. 회원단체 : 제1종단체 및 제2종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고 그 회원명부에 등재 또는 서면에 의한 가입 의사 표시에 의해 구성된 단체(동호회, 동문회, 카드사 회원, 온라인 사업체 회원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단체). 다만,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- 라. 다수구매자집단 : 상품판매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운영, 유지되는 상품(각종 재화, 용역 및 서비스)의 구매자집단
2.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 단체에 소속한 주계약의 계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수가 단체 유형별로 다음의 인원수(이하 “단체별 최소인원수”라 합니다) 이상이어야 합니다.
 - 가. 제1,2종 단체 : 5인
 - 나. 회원단체 : 20인
 - 다. 다수구매자집단 : 500인

제 4조 [개별계약으로의 전환]

-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제6조(특약의 소멸)에 따라 특약은 소멸되며, 탈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 개별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,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하여야 합니다.
- ③ 단체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5조 [특약의 보험기간]

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별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을 따릅니다.

제 6조 [특약의 소멸]

-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는 효력이 없으며 주계약의 규정을 장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1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
 2.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
 다만,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.
 3. 피보험자 수가 단체별 최소인원수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월이 지나고도 단체별 최소 인원수 이상이 되지 않았을 때
-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, 제3호에 대해서는 이 특약 전부에 대하여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이 더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제 7조 [보험요율의 적용]

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신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.

제 8조 [대표자의 선정]

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.

제 9조 [특약 보험료의 납입]

- ① 보험료는 단체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계약체 결시 단체와 회사의 협약에 따라 단체의 소속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자가 자동이체납입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.
-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. 다만,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, 자동이체납입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통장

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[제10조 [상법 제735조3의 적용]

-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,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,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등 피보험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은 별도 동의 내지 약정을 해야 합니다.
-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.

[제11조 [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]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